

#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동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580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3월 31일

발 의 자: 강동길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동욱, 김성준,  
김영철, 김용호, 김원태,  
남창진, 민병주, 박 석,  
박성연, 박승진, 박철성,  
봉양순, 서준오, 송도호,  
송재혁, 왕정순, 유정인,  
유정희,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종환, 임규호,  
임종국, 정준호, 최민규,  
한 신, 홍국표 의원(29  
명)

##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른 '방재신기술'이 삭제되면서 '22.1월 제정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로 대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가 자문하는 건설공사 적용 신기술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른 방재신기술'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로 변경함(안 제5조제2항제2호나목).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자연재해대책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 · 구조문대비표 첨부

#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기능) ① (생 략)</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p> <p>1. (생 략)</p> <p>2.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적용하고자 하는 아래 각 목의 기술가. (생 략)</p> <p>나. 「<u>자연재해대책법</u>」 제61조에 따른 방재신기술</p> <p>다. (생 략)</p> <p>3. (생 략)</p>	<p>제5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u>재난안전산업 진흥법</u>」 제14조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p> <p>다.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른 '방재신기술'이 삭제되면서 '22.1월 제정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로 대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병준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2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